

※ 번역문은 민원 신청을 위한 참고용이며, 기존의 한글 서식에 한글로 작성하여 제출해야 함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こちらの翻訳文は民願申請の参考用であり、提出時には既存の韓国語の書式に韓国語でご記入くださいますようお願いいたします。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별지 제7호의2서식] <개정 2021. 10. 14.> (앞쪽)
- 賃金債権保障法施行規則[別紙第7号の2書式] <改正2021年10月14日> (表面)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발급신청서
未払い賃金等・事業主確認書発給申請書

접수번호 受付番号	접수일 受付日	처리기간 3일 処理期間 3日
--------------	------------	--------------------

①신청인 ①申請人	성명 氏名	주민등록번호 住民登録番号
	주소 住所	
	(휴대전화번호: (携帯電話番号:	전자우편주소: 電子メールアドレス:
	근무기간 勤務期間	
	지급받지 못한 임금등의 총 금액 未払い賃金等の総額	

②대상 사업주 ②対象 事業主	사업장명 事業場の名称		
	대표자 代表者	성명 氏名	연락처 連絡先
	소재지 所在地	사업장 事業場	
		실제근무지 実際の勤務地	
	사업개시일 事業開始日		건설공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建設工事の該当有無 [] 해당 [] 해당하지 않음 [] 該当する [] 該当しない

③적법한 직상 건설사업 자(대상자 인 경우에만 해당) ③適法な 直上の建 設事業者 (対象者の み記入)	사업장명 事業場の名称		
	대표자 代表者	성명 氏名	연락처 連絡先
	소재지 所在地		
	사업개시일 事業開始日		

신청 申請	④신청내용 ④申請内容		
	⑤신청구분 ⑤申請区分		
	[] 퇴직자용 [] 退職者用		[] 재직자용 [] 在職者用
	⑥사용용도 ⑥使用用途		
	[] 소송 제기용(법률구조 등) [] 대지급금 청구용(법 제7조제1항제5호) [] 기타 () [] 訴訟提起用(法律救済等) [] 立替払請求用(法第7条第1項第5号) [] その他 ()		
신청부수 申請部数			

「임금채권보장법」 제12조제1항 및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체불 임금 등 및 체불사업주의 확인을 신청하오니, 체불 임금 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賃金債権保障法」第12条第1項及び「賃金債権保障法施行規則」第9条の2第1項に基づき、未払い賃金等及び未払事業主の確認を申請しますので、未払い賃金等・事業主確認書を発給してください。

20 . .
20 年 月 日

신청인 : (인)
 申請人 : (印)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地方雇用労働庁 (○○支庁) 長 殿

작성방법

作成方法

1. ① “신청인” 란에는 신청인의 성명 등 인적사항과 근무기간, 지급받지 못한 임금등을 적습니다. 다만, 대상 사업주가 동일하여 여러 명이 함께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표 신청인의 인적사항 등을 적고, 그 밖의 신청인은 별지에 해당 인적사항과 근무기간, 지급받지 못한 임금등을 적어 제출할 수 있습니다.
1. ①의 「신청인」欄には申請人の氏名等の基本事項と勤務期間、未払い賃金等を記入してください。但し、同一対象事業主に対して複数人が申請を行う場合には、申請人を代表する者の基本事項等を記入し、その他の申請人については別紙に当該基本事項と勤務期間、未払い賃金等を記入して提出することができます。
2. ② “대상 사업주” 란에는 대상 사업주의 사업장명 및 사업장 소재지, 해당 근로자의 실제 근무지 등을 적습니다. 사업개시일은 사업주가 근로자를 채용한 후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 또는 사업준비를 시작한 날을 적습니다(해당 날짜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빈칸으로 둡니다).
2. ②の「対象事業主」欄には対象事業主の事業場の名称及び事業場の所在地、当該労働者の実際の勤務地等を記入してください。事業開始日は、事業主が労働者を採用した後、労働者を使用して事業又は事業の準備を開始した日を記入してください（当該日付が分からない場合は空欄のままにしてください）。
3. ③ “적법한 직상 건설사업자” 란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가 아닌 공사도급의 하수급인에게 고용되었던 경우에만 작성하고, “적법한 직상 건설사업자” 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가 아닌 해당 사업주(무면허 하수급인)에게 하도급을 주었던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해당하는 건설사업자의 사업장명, 소재지 등을 적습니다. 사업개시일은 사업주가 근로자를 채용하여 사업 또는 사업준비를 시작한 날을 적습니다(해당 날짜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빈칸으로 둡니다)。
3. ③の「適法な直上の建設事業者」欄には「建設産業基本法」第2条第7号に基づく建設事業者ではない工事請負人の下請人に雇用された場合のみ記入し、「適法な直上の建設事業者」については、「建設産業基本法」第2条第7号に基づく建設事業者ではない当該事業主（無免許の下請人）に下請を出した「建設産業基本法」第2条第7号に該当する建設事業者の事業場の名称、所在地等を記入してください。事業開始日は、事業主が労働者を採用し、事業又は事業の準備を開始した日を記入してください（当該日付が分からない場合は空欄のままにしてください）。
4. ④ “신청내용” 란에는 “○○○○년 ○월 ○일에 신고한 체불임금 진정(고소)사건과 관련된 체불임금 및 체불사업주 내역”으로 적습니다.
4. ④「申請内容」欄には、「○○○○年○月○日に申告した未払い賃金に関する陳情（告訴）事件と関連する未払い賃金及び未払事業主の内容」を記入してください。
5. ⑤ “신청구분” 란 중 “퇴직자용” 은 임금등 체불을 이유로 해당 사업주에 대해 소송등 또는 진정등을 제기한 날을 기준으로 퇴직한 경우(「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에 따른 퇴직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을 청구하려는 경우 등)에 표시하고, “재직자용” 은 임금등 체불을 이유로 해당 사업주에 대해 소송등 또는 진정등을 제기한 날을 기준으로 해당 사업주와 근로계약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의2에 따른 재직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을 청구하려는 경우 등)에 표시합니다.
5. ⑤「申請区分」欄の「退職者用」は賃金等の未払を理由に、当該事業主に対して訴訟等又は陳情等を提起した日を基準に退職済みの場合（「賃金債権保障法」第7条に基づく退職労働者に対する立替払請求をする場合等）にチェックし、「在職者用」は賃金等の未払を理由に当該事業主に対して訴訟等又は陳情等を提起した日を基準に当該事業主との労働契約が終了していない場合（「賃金債権保障法」第7条の2に基づく在職労働者に対する立替払請求をする場合等）にチェックしてください。
6. ⑥ “사용용도” 란 중 “소송 제기용(법률구조 등)” 은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제4호(같은 법 제7조의2제1항에서 제7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에 따른 대지급금 청구에 필요한 확정 판결등을 받거나 체불 사업주를 상대로 임금채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소송을 제기하려는 용도(「법률구조법」 제22조의 법률구조의 절차에 따른 소 제기를 포함)로 사용하려는 경우에 표시하고, “대지급금 청구용(법 제7조제1항제5호)” 은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제5호(같은 법 제7조의2제1항에서 제7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에 따라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로 곧바로 대지급금을 청구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하려는 경우에 표시하며, “기타” 는 위의 경우 외의 용도로 사용하려는 경우에 표시한 뒤 해당 내용을 적습니다.
6. ⑥「使用用途」欄の「訴訟提起用（法律救済等）」は「賃金債権保障法」第7条第1項第4号（同法第7条の2第1項から第7条第1項第4号に該当する場合を含む）に基づく立替払請求に必要な確定判決等を受けたり、未払事業主を相手に賃金債権を行使するために訴訟を提起しようとする用途（「法律救助法」第22条の法律救済の手続きによる訴訟の提起を含む）で使用する場合にチェックし、「立替払請求用（法第7条第1項第5号）」は「賃金債権保障法」第7条第1項第5号（同法第7条の2第1項において第7条第1項第5号に該当する場合を含む）に基づき、未払い賃金等・事業主確認書により直ちに立替払を請求するための用途で使用する場合にチェックし、「その他」は上記の場合以外の用途で使用する場合にチェックしてから当該内容を記入してください。

※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제5호(같은 법 제7조의2제1항에서 제7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에 따라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로 곧바로 대지급금을 청구하려는 경우에는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의 최초 발급일부터 6개월 이내에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 「賃金債権保障法」第7条第1項第5号（同法第7条の2第1項から第7条第1項第5号に該当する場合を含む）に基づき、未払い賃金等・事業主確認書により直ちに立替払を請求する場合は未払い賃金等・事業主確認書の最初の発給日から6カ月以内に簡易立替払請求書を勤労福祉公団に提出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

7. 근로감독사무 처리과정에서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9조의2제2항제1호의 체불 임금등에 관한 사항 및 같은 항 제2호의 체불 사업주에 대한 사항이 모두 확인된 경우에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가 발급됩니다.
7. 労働監督事務の処理過程において、「賃金債権保障法施行規則」第9条の2第2項第1号の未払い賃金等に関する事項及び同項第2号の未払事業主に関する事項が全て確認された場合に、未払い賃金等・事業主確認書が発給されます。

처리절차
処理の流れ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この申請書は以下のように処理されます。

